

서울고등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나2016445(본소), 2021나2016452(반소) 판결

[대여금 ·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맑은샘

담당변호사 김명선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북부

담당변호사 정윤채

변 론 종 결 2021. 9. 16.

판 결 선 고 2021. 10. 14.

제1 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4. 15. 선고 2019가합658(본소), 2019가 합27080(반소)

판결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B은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C은 164,200,000원 및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나머지 64,2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들에게 각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6. 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제1심판결 중 반소 부분을 취소한다. 반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제1심법원은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의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제외),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0행의 '찾기 어렵다.'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찾기 어렵다(피고들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수백 건의 금전거래가 있었는데 이 사건 각 차용증은 이에 대하여 정확히 정산을 하지 않은 채 원고의 말을 믿고 작성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차용증에 기재된 금액을 피고들의 잔존 채무라고 볼 수 없고, 차용증 작성 당시 원고가 경찰인 사위를 대동하여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는 등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피고들로 하여금 이 사건 각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차용증의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 5, 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차용증을 작성하기 이전에 잔존 채무액에 관하여 수시로 상의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채무액을 산정한 후 이 사건 각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차용증을 작성한 후에도 원고와 피고들이 평소와 같이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원만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 및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차용증의 증명력을 배척하기 어렵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1) 변제충당

피고들은 2017. 2.경 원고가 계주로 있는 계에 가입하였는데, 피고 B은 2017. 3. 20.부터 2019. 2. 20.까지 96,000,000원을, 피고 C은 2017. 9. 20.부터 2019. 1. 21.까지 85,000,000원을 각 계불입금 명목으로 원고 계좌로 송금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과의 계 계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젯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원고는 피고들이 위와 같이 납입한 계불입금을 자신의 채무에 대한 변제로 충당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위 각 계불입금을 피고들의

각 대여금 채무에 변제충당하면 피고 B의 잔존 채무는 54,000,000원(= 150,000,000원 - 96,000,000원), 피고 C의 잔존 채무는 13,902,295원(= 98,902,295원 - 85,000,000원)이 된다.

2) 상계 항변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았음에도 피고들에게 갯돈을 지급하지 않고 갯돈이 이미 정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채무자가 미리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채권자인 피고들은 최고 없이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 이에 피고들이 2021. 7. 20.자 준비서면으로 계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준비서면이 원고에게 도달됨으로써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계 계약이 해제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계불입금으로 피고 B에게 96,000,000원, 피고 C에게 85,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들은 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대여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따라서 피고 B의 잔존 채무는 54,000,000원(= 150,000,000원 - 96,000,000원), 피고 C의 잔존 채무는 13,902,295원(= 98,902,295원 - 85,000,000원)이 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갯돈이나 반환할 계불입금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1) 원고는 2019. 5. 22. 피고 B에게 “여기 동생이 원래 이제 계를 들어가기로 해서 1, 2, 3번을 해서 해결을 하려고 했거든. 근데 계를 손을 들어버리니까 그게 약속을 이행을 못하게 되고 이자가 안 들어가니까 나를 잡아먹을라고 그래 친구 신랑이...(중략)... 그러니까 약속이행이 안 되니까 이제 이렇게. 그때 계를 안한다고 그랬으면 돈이 이렇게 못 갚을 거예요. 왜냐면 남의 돈을 갓다 그렇게 줄 수가 없었지”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 B은 “그 계는 그니까 그 때 당시에는 가계도 좀 된 상태였고 했는데 이게 갑자기 지금 몇 달 사이에 지금 갑자기... 지금 나도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다 보니깐”이라고 대답하여 피고 B이 원고에게 계불입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위와 같은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 B에게 사전에 선순위로 갯돈을 지급한 후 매달 계불입금을 지급받았기로 하였으나 피고 B이 원고에게 계불입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원고는 피고들에게 선순위로 갯돈을 이미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주장하는데 반해, 피고 B은 제1심에서는 원고가 2017. 2. 23. 피고 B에게 갯돈 80,000,000원 중 대여금 추심 명목으로 44,800,00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35,2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 B은 원고로부터 갯돈을 먼저 지급받고 사후에 계불입금을 납입하던 것으로 보인다).

2) 원고가 제출한 2021. 2. 2.자 준비서면에 첨부된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거래내역(2015. 1. 28.부터 2019. 4. 22.까지)에는 피고 C이 계불입금으로 납입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이 원고가 변제받은 금원에 이미 포함되어 있고, 원고는 위 돈을 모두 반영하여 피고 C에게 지급한 돈을 876,732,890원, 피고 C이 원고에게 변제한 돈을 753,795,000원으로 계산하여 채무액을 정산하였다. 위 차액을 계산해 보면 원고가 피고 C으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돈은 122,937,890원(= 876,732,890원 - 753,795,000원)이 되는데, 여기에 이 사건 각 차용증 작성 이전부터 원고와 피고 C이 수시로 채무액 및 이자에 관하여 대화를 나눈 점, 이 사건 2 차용증에 피고 C이 자필로 “1억을 차용함.”이라는 문구를 기재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2 차용증 작성 당시 원고와 피고 C은 그때까지 원고가 피고 C으로부터 지급받은 변제금, 계불입금 등을 모두 포함하여 정산한 뒤 채무를 1억 원으로 확정하고 이를 이 사건 2 차용증에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 C의 주장과 같이 위 각 돈이 계불입금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변제충당 합의에 따라 이미 변제충당된 것으로서 원고가 이를 추가로 피고 C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혜선, 판사 임영우, 판사 채동수